

『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2차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

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통과('16.12.12)됨에 따라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을 통하여 탄소소재 핵심부품 상용화, 체계적인 기업 육성·지원으로 산업구조 다변화 및 구미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.

○ 해평 정다운센터 신축

면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적 공간으로서 해평 정다운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촌마을의 문화·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

○ 위 치 :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10-1블럭

○ 대 상 : 토지 6,612㎡(2,000평)

건물 지상4층 지하1층 / 8,600㎡(2,601평)

○ 기준가격 : 10,779백만원

- 토지 1,729백만원(5공단 분양가)

- 건물 9,050백만원(건축비) (도비 4,525 시비 4,525)
- 사업기간 : 2017년 ~ 2019년
- 주요시설
 - 탄소 성형부품 인증 및 시험생산 지원시스템
 - 네트워킹, 애로기술, 시제품 상용화기술 및 KOLAS 인증 지원시스템

□ 해평 정다운센터 신축

- 위 치 :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160-1번지
- 대 상 : 토지 500㎡(151평)
 건물 지상3층 / 연면적 715.9㎡(216평)
- 기준가격 : 2,100백만원
 - 토지 200백만원(공시지가) (국비 140 시비 60)
 - 건물 1,900백만원(건축비) (국비 1,330 시비 570)
- 사업기간 : 2017년 ~ 2019년
- 주요시설
 - 1층 : 다목적 회의실, 문화공간 등
 - 2·3층 : 남·녀 목욕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,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의회 의결”사항으로, 대상 공유재산은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등 4건에 128억 79백만원임.
- 취득재산(안)의 내용을 살펴보면
 -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건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통과(16.12.12, 기재부)됨에 따라 탄소소재 핵심부품의 상용화, 체계적인 기업 육성·지원으로 산업구조 다변화 및 구미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 - 해평 정다운센터 신축 건은 해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(15.12, 농식품부) 면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적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촌마을의 문화·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